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성백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20 일

발 의 자 : 성 백 진 의원

찬 성 자 : 김정자, 김영한, 김진철, 김태수,
김혜련, 김희걸, 맹진영, 장우윤,
유동균, 이승로, 김기대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하고 “고취”를 “높이다”로 하며 “설치하고자 함”을 “설치하려는”로 함.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고취함으로써”를 “높임으로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고취하고”를 “높이고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헌혈장려 및 지원”이란 헌혈권 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<u>고취함</u> 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 <u>높임으로써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	제3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「혈액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<u>고취하고</u>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높이고</u> ----- -----.
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	제4조(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)
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</u> 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	①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 장관</u> 의 ----- ----- ----- -----

수립하여야 한다.	-----.
제5조(헌혈장소 설치·관리) 시장은	제5조(헌혈장소 설치·관리) -----
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	-----
소에 헌혈의 집을 <u>설치하고자 할</u>	----- <u>설치하려는</u>
경우 재정적·행정적으로 지원할	-----
수 있다.	-----.